

---

# 과업지시서

---

용역명	2025년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운송
-----	-------------------------

2024. 12.

#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운송(선박임차)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 이라 한다)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담당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운송(선박임차)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운송(선박임차) 용역의 경쟁입찰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은 다음연도 계약 체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과업물량)** 계약기간동안 운송 횟수는 63회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운항 횟수 : 연 63회(주 1회 이상)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제5조(대가 지급)** 용역비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자료(선박 항해 일지, 선박 안전교육 일지, 운송 사진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계약서 및 운항시간, 운항횟수, 운항속력 등 운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원활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8조(근로자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의 관리책임자 등의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운송(선박임차) 용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원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선원을 채용하여 선박운항 중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원의 결원 또는 일시 업무량의 과다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 구역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선박관리업무 담당자를 상주 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생활쓰레기 수거 해상화물 운송 용역 수행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응대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내항화물운송업 허가증에 등록된 선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선박으로만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원·선박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선박공제의 피보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휴항 및 대체운항 등)** ① 계약상대자가 휴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랑주의보 등의 기상악화, 운항관리실의 운항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휴항을 신청 또는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운항관리실의 운항통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합당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박운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따라 휴항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운항계획 등과 동등한 수준의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대체 운항할 책임을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휴항을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4항에 의한 대체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운항하지 않은 횟수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선박검사 및 예비선 사용 등)** ① 「선박안전법」에서 규정된 정기·중간 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시기를 선박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박이 휴항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박과 동등 이상의 선박을 대체 운항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계약단가로 하고 대체 운항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운항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카페리선 자동차 운반선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선박검사내역, 수리내역 및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교체주기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기관 등의 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 등에 의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물량과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1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경쟁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유류비와 실제 유류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현격하여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화물 운송용역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만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귀책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 상대자의 귀책 있는 사유 및 선박운항에 따른 통상적인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선박 운항실적 및 화물 운송용역 실적
2. 선원 변동내역 등

**제16조(개선명령)**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운항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 제8조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정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 해지 또는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휴항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운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체선박 운항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를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1. 계약상대자가 선박수리 및 정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당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발주기관의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수거 해상화물운송용역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에 저해된 경우
  3. 관계법규 및 기타 다른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해상화물 운송용역을 할 수 없는 경우
- ②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정일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해지에정일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해지에정일까지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성실히 운항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객 또는 선원 피해 및 유류오염, 환경오염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국고선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선박운항노선)**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선박운항 노선은 다음과 같이 운항하되 폐기물 발생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화정면 : 백야도 → 송여자 → 여자마파(2) → 여자대동 → 사도 → 상화도 → 하화도 → 백야도
2. 남 면 : 국동 → 제도 → 자봉도 → 나발도 → 대두라(2개소) → 두라(봉통) → 횡간도 → 송도 → 군내항
3. 남 면 : 군내항 → 송도 → 횡간도 → 두라(봉통) → 대두라(2개소) → 나발도 → 자봉도  
→ 제도 → 군내항(출항장소 변경시)

※ 관광성수기에는 남면 운항 선박이 하화도, 사도를 추가 수거

### 제21조(안전관리)

1. 해상운송 관련법규 적용 :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고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고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 적재 고박 지침서를 마련한다.
2. 차량 통제 절차
  - 갑판의 적재할 화물(차량) 총중량이 복원성 기준상 허용된 중량 초과시 산적 제한
  - 모든 절차의 이행은 선사 및 선장의 책임하에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선에 있음
  - 차량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차량 고박(고정) 실시
3. 안전 준수사항
  - 선박 탑승 시, 선주가 시행하는 안전교육 및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선주는 탑승인원 전원이 착용 가능한 안전장비(구명조끼, 구명환 등)를 확보하고 탑승 인원은 안전 장비 위치를 확인
  - 폐기물 수거 작업 시 안전복무 작업 계획서 및 환경미화원 규정에 의한 안전사항 준수
4. 선박검사
  - 「선박안전법」에서 규정된 정기·중간 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선박검사 시기를 확인하고, 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선박 검사내역, 수리 내역 및 검사 결과 제출
5. 선박 사고 시 대피요령
  - 선박사고 발생 시 주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다.
  - 위험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를 입거나 구명환을 준비한다.
  - 선장이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부로 탈출한다.

**제22조(해석)** 계약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쌍방간 합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